

**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**

| 현 행  | 개 정(안)  | 비 고  |
|--|---|--|
|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 및 「한국은행의 금융증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에 의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(이하 “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”이라 한다)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|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 및 「한국은행의 금융증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에 의해 한국은행 인천본부(이하 “인천본부”라 한다)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(이하 “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”이라 한다)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  |  |
| <p><b>제2조(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)</b>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</li> <li>2.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</li> </ol>  | <p><b>제2조(지원대상 대출실적)</b>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</li> <li>2.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</li> </ol> | <p>- 소재지 증빙자료 적시</p> <p>- 소재지 증빙자료 적시</p>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3조(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)</b>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,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   | <p><b>제4조(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)</b>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특별지원부문, 전략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에 구분하여 운용한다.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.</p> <p>③ 전략지원부문 한도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제외한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,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</p> <p>④ 일반지원부문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및 전략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.</p>   | <p>- 조 내림, 항 신설, 순서 조정</p> <p>- 지원자금 부문별 운용규모 설정 근거 명시</p> |
| <p><b>제4조(지원대상)</b>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(동 사실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확인으로 증명한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이하 “지원대상업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.</p> <p>제1호 ~ 제8호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9. 소재·부품 생산기업</li> <li>10. 농림수산업 관련기업</li> <li>11. 명절·재해 자금 등</li> <li>12. 기타 지원기업</li> <li>13.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</li> </ol> <p>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&lt;별표 1&gt;과 같다.</p> | <p><b>제3조(지원대상 중소기업)</b>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이하 “지원대상업체”라 한다)으로 한다.</p> <p>제1호 ~ 제8호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9. 소재·부품·장비 생산기업</li> <li>10. 농림수산업 관련기업</li> <li>11. 명절·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</li> <li>12. 기타 지원기업</li> <li>13.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</li> </ol> <p>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&lt;별표 1&gt;과 같다.</p>            | <p>- 조 올림, 문구 수정</p> <p>- 지원대상업체명 수정</p>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| 개정(안)  | 비고  |
|--|--|---|
| <p><b>제5조(전략지원부문)</b> 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인천광역시, 부천시 및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전략지원 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 다만, 제4조 제2항의 &lt;별표 1&gt;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</p> <p>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④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).</p> <p>⑤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⑥ 인천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,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6조 제5항 및 제6항,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⑧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.</p> | <p><b>제6조(전략지원부문)</b> ① 제3조 제1항 제6호(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) 및 제10호(농림수산업 관련기업)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인천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 다만, 제3조 제2항의 &lt;별표 1&gt;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</p> <p>③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④ 전략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배정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.</p> | <p>- 조 내림, 인용 조문 수정, 문구 수정</p> <p>- 인용 조문 수정</p> <p>- 중복 문구 삭제수정</p> <p>- 제4조로 이동</p> <p>- 항 올림,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</p> <p>- 항 올림,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</p> |
| <p><b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b> 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.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성중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 | <p><b>제5조(특별지원부문)</b> ① 제3조 제1항 제13호(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)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를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, 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③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성중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  | <p>- 조 올림, 인용 조문 수정 및 대출취급계획 요청 근거 마련</p> <p>- 중복 문구 삭제수정</p> <p>- 항 올림</p>   |

| 현행  | 개정(안)  | 비고  |
|---|--|---|
| <p>⑥ 변호사업, 변리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병원 및 의원(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, 71102업종, 71201업종, 71202업종, 861~862업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  | <p>(삭제)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을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 배정한다.</p>   | <p>- 제7조로 이동</p> <p>- 항 올림, 문구 수정</p>   |
| <p><b>제7조(일반지원부문)</b>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.</p> <p>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.</p> <p>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⑦ 제5조 제3항 및 제4항,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.</p> | <p><b>제7조(일반지원부문)</b> ① 제5조 제1항(특별지원부문) 및 제6조 제1항(전략지원부문)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② 일반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</p> <p>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 이내에서 비례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제6조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적용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④ 제5조 제3항은 일반지원부문의 배정에도 적용한다.</p> <p>⑤ 변호사업, 변리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병원 및 의원(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, 71102업종, 71201업종, 71202업종, 861~862업종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⑥ 제5조 제2항, 제6조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본부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.</p> | <p>- 제4조로 이동</p> <p>- 지원 대상 대출실적 명시</p> <p>- 중복 문구 삭제수정</p> <p>-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제외업종 명시</p> <p>- 항 올림, 인용 조문 수정</p> <p>- 항 올림, 인용 조문 및 문구 수정</p> |
| <p><b>제8조(지원일몰제도)</b>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(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)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 | <p><b>제8조(지원일몰제도)</b>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(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)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  | <p>- 문구 수정</p>  |
| <p><b>제9조(명절·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)</b>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1호(명절·재해자금 등) 및 제12호(기타 지원기업) 지원시 지원대상, 지원한도,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p>  | <p><b>제9조(명절·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)</b> 본부장은 제3조 제1항 제11호(명절·재해자금 필요기업 등) 및 제12호(기타 지원기업) 지원시 지원대상, 지원한도,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p>   | <p>- 문구 수정</p>  |

| 현행  | 개정(안)  | 비고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|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b>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.</p> <p>(신설)</p> <p>1호 ~ 7호 (생략)</p>   | <p><b>제10조(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기업(중소기업 이외의 기업)에 대한 대출금</p> <p>2호 ~ 8호 (현행과 같음)</p>  | <p>-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 추가</p> <p>- 호 내림</p>        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11조(자료제출)</b> ①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<u>한국은행 인천본부</u>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호 ~ 7호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 | <p><b>제11조(자료제출)</b> ①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<u>인천본부</u>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호 ~ 7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|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12조(자금의 회수 및 배정)</b> <u>한국은행 인천본부</u>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.</p>   | <p><b>제12조(자금의 회수 및 배정)</b> <u>본부</u>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<u>인천본부</u>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산정한 당월중 <u>인천본부</u>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.</p>   | <p>- 문구 수정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13조(제재)</b> ① <u>한국은행 인천본부</u>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·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.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&lt;별표 3&gt;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 감축</p> <p>(신설)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<b>제13조(제재)</b> ① <u>본부</u>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·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.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<u>배정한도</u> 감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위규사유</th> <th>한도감축 배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기업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</td> <td>2.5배 이내</td> </tr> <tr> <td>폐업업체에 대한 대출</td> <td>1.5배 이내<sup>2)</sup></td> </tr> <tr> <td>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</td> <td>2.0배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<br/>2)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(또는 소급)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(또는 소급)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 위규사유  | 한도감축 배수 | 대기업 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| 2.5배 이내 |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| 1.5배 이내 <sup>2)</sup> |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| 2.0배 이내 | <p>- 문구 수정</p> <p>- 문구 수정 및 표 신설</p> |
| 위규사유  | 한도감축 배수  |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기업 <sup>1)</sup>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  | 2.5배 이내  |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  | 1.5배 이내 <sup>2)</sup>  |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 | 2.0배 이내  |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14조</b> (생략)</p>   | <p><b>제14조</b> (현행과 같음)</p>  |  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(신설)</p> 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&lt;2020.10. .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11월 1일(2021년 1월 한도배정)부터 시행한다.<br/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   | 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경과조치 마련</p> |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| 개 정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별표 1><br><b>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</b> |             |  | <별표 1><br><b>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</b> 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산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부문        | 선 정 기 준 <sup>1)</sup>  | 전산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부문        | 선 정 기 준 <sup>1)</sup>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기업        | 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3조 및 「동 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되며 창업 후 3년이내인 제조업* 영위기업(금융기관 결제모집장이 확인<별지 8호 서식>한 경우)<br>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: 10 ~ 33  | A1  | 창업기업        |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조 및 「동 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되며 창업 후 3년이내인 제조업* 영위기업(금융기관 결제모집장이 확인<별지 6호 서식>한 경우)<br>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: 10 ~ 33  | - 법규명 및 부서명 수정            |
| A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벤처기업        | 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 | A2  | 벤처기업        |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혁신기업        | - <u>중소벤처기업청</u> 이 선정한 INNO-BIZ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및 MAIN-BIZ기업<br>- (생 략)<br>- (생 략)<br>- (생 략)<br>- (생 략)  | A3  | 혁신기업        | - <u>중소벤처기업부</u> 가 선정한 INNO-BIZ기업(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) 및 MAIN-BIZ기업<br>- (현행과 같음)<br>- (현행과 같음)<br>- (현행과 같음)<br>- (현행과 같음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녹색기업        | - (생 략)<br>- (생 략)<br>- (생 략)<br>- 산업통상자원부 <u>기술표준원</u> 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) 부여제품 생산업체   | A4  | 녹색기업        | - (현행과 같음)<br>- (현행과 같음)<br>- (현행과 같음)<br>- 산업통상자원부 <u>국가기술표준원</u> 이 인증한 GR마크(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) 부여제품 생산업체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천기업        | -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비전기업(인증서 발급 5년 이내) 및 <u>향토기업</u><br>- (생 략)   | A6  | 추천기업        | -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비전기업(인증서 발급 5년 이내)<br>- (현행과 같음)   | - 향토기업 삭제                 |
| A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| - (생 략)<br>- (생 략)<br>-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*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<br>*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할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상용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인 기업<br>- 「 <u>사회적기업육성법</u> 」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<br>-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*<br>*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3개년 매출액증가율 또는 고용성장률이 우수하여 지원이 결정된 기업<br>- (생 략) | A8  |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| - (현행과 같음)<br>- (현행과 같음)<br>-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<br>(삭 제)<br>- 「 <u>사회적기업 육성법</u> 」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<br>-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<br>(삭 제)<br>- (현행과 같음) | -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세부 요건 삭제   |
| A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입기업        | - (생 략)  | A9  | 전입기업        | - (현행과 같음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출관련기업      | - (생 략)  | A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출관련기업      | - (현행과 같음)  | -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세부 요건 삭제 |

| 현행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개정(안)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비고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p>&lt;별표 1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산코드</th> <th>지원부문</th> <th>선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11</td> <td>소재·부품·생산기업</td> <td>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·소재 전문기업</td> </tr> <tr> <td>A13</td> <td>농림수산업 관련기업</td> <td>- (생략)</td> </tr> <tr> <td>A14</td> <td>명절 및 재해자금 등</td> <td>- (생략)</td> </tr> <tr> <td>A15</td> <td>기타 지원기업</td> <td>- (생략)</td> </tr> <tr> <td>A16</td> <td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</td> <td>- (생략)<br/>5) 음식·숙박업(55~56), 다만 주점업(5621)은 제외<br/>6) 여행업(752)<br/>7) 여가업(90~91), 다만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전산코드  | 지원부문             | 선정기준   | A11    | 소재·부품·생산기업 |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·소재 전문기업 | A13           |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  | - (생략)              | A14  | 명절 및 재해자금 등 | - (생략) | A15  | 기타 지원기업 | - (생략) | A16 |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 | - (생략)<br>5) 음식·숙박업(55~56), 다만 주점업(5621)은 제외<br>6) 여행업(752)<br>7) 여가업(90~91), 다만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 | <p>&lt;별표 1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산코드</th> <th>지원부문</th> <th>선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11</td> <td>소재부품·생산기업</td> <td>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</td> </tr> <tr> <td>A13</td> <td>농림수산업 관련기업</td> <td>-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A14</td> <td>명절 및 재해자금 필요기업 등</td> <td>-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A15</td> <td>기타 지원기업</td> <td>-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A16</td> <td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</td> <td>- (현행과 같음)<br/>5) 음식·숙박업(55~56) (삭제)<br/>6) 여행업(752)<br/>7) 여가업(90~91) (삭제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    |      | 전산코드 | 지원부문   | 선정기준                | A11  | 소재부품·생산기업   | 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| A13 |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| - (현행과 같음)       | A14    | 명절 및 재해자금 필요기업 등 | - (현행과 같음) | A15  | 기타 지원기업       | - (현행과 같음)    | A16           |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 | - (현행과 같음)<br>5) 음식·숙박업(55~56) (삭제)<br>6) 여행업(752)<br>7) 여가업(90~91) (삭제) | <p>- 확인서 발급기관 변경, 장비 전문기업 추가</p> <p>- 단서 삭제</p>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전산코드   | 지원부문                | 선정기준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1  | 소재·부품·생산기업          |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·소재 전문기업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3  |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        | - (생략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4  | 명절 및 재해자금 등         | - (생략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5  | 기타 지원기업             | - (생략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6  |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     | - (생략)<br>5) 음식·숙박업(55~56), 다만 주점업(5621)은 제외<br>6) 여행업(752)<br>7) 여가업(90~91), 다만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전산코드   | 지원부문                | 선정기준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1  | 소재부품·생산기업           | 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3  |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        | - (현행과 같음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4  | 명절 및 재해자금 필요기업 등    | - (현행과 같음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5  | 기타 지원기업             | - (현행과 같음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A16  | 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영위기업     | - (현행과 같음)<br>5) 음식·숙박업(55~56) (삭제)<br>6) 여행업(752)<br>7) 여가업(90~91) (삭제) 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p>&lt;별표 2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부동산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주점업</td> <td>56211 일반유흥주점업</td> </tr> <tr> <td>56212 무도유흥주점업</td> </tr> <tr> <td>(신설)<br/>56219 기타주점업</td> </tr> <tr> <td>노래방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무도장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도박장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미용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안마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금융관련업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인력공급업<sup>1)</sup>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                  |  | 업종명  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| 부동산업   | (생략)   | (생략)       | 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211 일반유흥주점업 | 56212 무도유흥주점업 | (신설)<br>56219 기타주점업 | 노래방  | (생략)        | 무도장    | (생략) | 도박장     | (생략)   | 미용업 | (생략)            | 안마업  | (생략)  | 금융관련업 | (생략) | (생략) | (생략)   | 인력공급업 <sup>1)</sup> | (생략) | <p>&lt;별표 2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부동산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주점업</td> <td>56211 일반유흥주점업</td> </tr> <tr> <td>56212 무도유흥주점업</td> </tr> <tr> <td>56213 생맥주 전문점</td> </tr> <tr> <td>56219 기타주점업</td> </tr> <tr> <td>노래방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무도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도박장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미용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안마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금융관련업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인력공급업<sup>1)</sup>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업종명       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| 부동산업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| 주점업  | 56211 일반유흥주점업 | 56212 무도유흥주점업 | 56213 생맥주 전문점 | 56219 기타주점업     | 노래방  | (현행과 같음)  | 무도장 | (현행과 같음) | 도박장 | (현행과 같음) | 미용업 | (현행과 같음) | 안마업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금융관련업 | (현행과 같음) | (현행과 같음) | (현행과 같음) | 인력공급업 <sup>1)</sup> | (현행과 같음) | <p>- 생맥주 전문점 추가</p> |
| 업종명 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부동산업 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주점업  | 56211 일반유흥주점업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56212 무도유흥주점업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신설)<br>56219 기타주점업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노래방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무도장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도박장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미용업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안마업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관련업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인력공급업 <sup>1)</sup>  | (생략)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업종명  |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부동산업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주점업  | 56211 일반유흥주점업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56212 무도유흥주점업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56213 생맥주 전문점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56219 기타주점업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노래방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무도장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도박장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미용업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안마업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관련업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인력공급업 <sup>1)</sup>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p>&lt;별표 3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삭제)</p>  |                     |  | <p>&lt;별표 3&gt; '위규사유별 한도 감축 배수' 제13조로 이동</p>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<p>&lt;별지 제2호 서식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전략지원부문</th> <th colspan="2">특별지원부문</th> <th colspan="2">일반지원부문</th> <th rowspan="2">계</th> </tr> <tr> <th>시설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th>시설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8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붙임: 1.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1부.<br/>2.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1부. 끝.</p>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구분  | 전략지원부문           |        | 특별지원부문 |            | 일반지원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| 시설자금                | 운전자금 | 운전자금        | 시설자금   | 운전자금 | 운전자금    | (생략)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<p>&lt;별지 제2호 서식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전략지원부문</th> <th colspan="2">특별지원부문</th> <th colspan="2">일반지원부문</th> <th rowspan="2">계</th> </tr> <tr> <th>시설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th>시설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th>운전자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8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붙임: 1.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1부.<br/>2.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1부. 끝.</p>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구분  | 전략지원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특별지원부문     |                  | 일반지원부문 |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| 시설자금 | 운전자금          | 운전자금          | 시설자금          | 운전자금            | 운전자금   | (현행과 같음)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<p>- 붙임 보고서명 변경</p>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구분   | 전략지원부문              |  |   | 특별지원부문           |        | 일반지원부문 |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시설자금                | 운전자금   | 운전자금  | 시설자금             | 운전자금   | 운전자금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(생략)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구분   | 전략지원부문              |  | 특별지원부문  |                  | 일반지원부문 |        | 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| 시설자금                | 운전자금   | 운전자금  | 시설자금             | 운전자금   | 운전자금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(현행과 같음)   |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|      |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<별지 제3호 서식> ~ <별지 제6호 서식><br>(생략) | 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6호 서식><br>(현행과 같음) |    |